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장철민 · 장종태
문진석 · 복기왕 · 서삼석
김영환 · 허 영 · 소병훈
박희승 · 김 윤 · 박상혁
정준호 · 최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·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.

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,201억원, 2023년 7조 2,082억원, 2024년 7조 1,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,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.

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제71조제3항제3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<u>2026년 12월 31</u> <u>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제71조제3항제4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<u>2026년 12월 31</u> <u>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<u>2030년 12월 31</u> <u>일</u>-----.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<u>2030년 12월 31</u> <u>일</u>-----.